

제3절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1. 서 설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기재는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에는 내용까지)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발생원인은 불필요하다. 물권의 경우에는 동일 주체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 종류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⁶¹⁾

토지의 일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와 마찬가지로 도면을 첨부하여 축척, 방위, 거리, 구조 등을 표시함으로써 목적물의 특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³⁶²⁾ 목적물이 다수이거나 표시가 길어 청구취지에서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불편할 때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 부동산 소유권 확인

가. 소유권확인

☐ 소유권확인 청구(기본형)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58 임야 3,204㎡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인용하는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또는 건물, 토지)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361)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2002, p126.

362)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특정방법 : 토지를 특정함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있는 축대의 일각, 건물초석의 일각, 거목, 경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을 기점으로 하고 방위를 표시함에는 각도를, 점과 점 사이는 거리를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축척도를 사용하는 등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1003 판결)

㉔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인천 ○○구 ○○동 161-1 대 56㎡ 및 같은 동 161-2 대 33㎡가 소외 최○○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㉕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소외 최○일과 피고 사이에 ○○시 ○○동 41-166(○○로 41길 166)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3.2㎡가 소외 최○일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갑이 신축하여 을에게 매도한 미등기 주택을 을의 관리인이 임의로 병에게 처분하여 건축물과세대장상 갑, 을, 병 명의로 순차 등록이 된 후 도로개설에 따른 지장물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을로서는 병을 상대로 지장물보상금 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미등기 주택이 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㉖ 소유권확인 청구(대위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 중 198분의 22 지분이 소외 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

민법 시행일 전에 임야를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25 전쟁 중에 그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부칙 제10조가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멸실로 인하여 상실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46166 판결)

[참조판례]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제3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아 그에 관해서 제3자와 채무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는 그의 불안정상태를 제거하고 그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확인과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6.4.27. 선고 73다1306 판결)

[참조판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권리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있다.(동부지원 1987.5.22. 선고 86가단766 판결)

☐ 소유권확인등 청구(공유확인, 보존등기말소)

1.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임야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3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5. 접수 제122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 8. 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영(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 2. 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지분공유확인, 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외 이○○, 이○○, 이○○, 이○○, 이○○의 각 5분의 1 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공유자들의 같은 목록 기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① 소송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갑 종중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을 종중이 자신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원피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로써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유무

원고 갑 종중과 독립당사자 참가인 을 종중은 서로 대상 토지들이 자기의 소유로서 자기 종중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며, 갑 종중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을 종중에게는 그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을 종중으로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갑 종중을 상대로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에게 그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갑 종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은 그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 토지들의 공유지분권자라는 것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을 종중으로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지분,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1. ○○시 ○○동 산 230 임야 25,587㎡ 중 25,578분의 20,856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지분, 공동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강○○가 전소유권의 3/10 지분을, 원고 지○○, 강○○, 강○○이 각 전소유권의 1/10 지분을, 원고 강○○, 강○○가 각 전소유권의 2/10 지분을 각 보유하는 원고들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 이 대장 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경기 ○○군 ○○리 426 전 2,046㎡ 중 9분의 3이 원고 강○○의, 각 9분의 2가 각 원고 최○○, 같은 강○○의 각 9분의 1이 원고 강○○, 원고 강○○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확인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공유자 지분)

별지 제1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는 원고 구○○의 소유이고, ② 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는 원고 추○○의 소유이며, ③ 같은 목록 제3기재 토지는 원고 구○○의 소유이고, ④ 같은 목록 제4기재 토지는 원고 김○○, 김○○, 김○○, 김○○, 김○○의 공동소유이고, ⑤ 같은 목록 제5기재 토지는 원고 구○○, 구○○, 구○○, 구○○, 구○○의 공동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5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수 있다.

②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지분)

○○시 ○○동 598 하천 1,521㎡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선택적으로, 원고들이 매수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1945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② 민법 시행 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 여부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4933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임야 19,04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소유권확인 판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

서울 ○○구 ○○동 225-239 대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같은 동 225-240 대 63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시멘트와즙 및 스테트즙 단층 건물 50.1㎡와 위 225-239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7,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위 225-240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4, 15, 8, 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즙 단층 건물 6.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확인 청구(철거, 인도, 금전지급)

1. 서울 ○○구 ○○동 31-61 대 1,9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합계 137㎡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61 대 1,941㎡ 중 별지 도면 표시 2, 8, 9, 10, 11,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4㎡ 지상의 적벽돌조 스라브기와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철거하여 위 도면표시 ㉤㉥㉦부분 합계 137㎡를 인도하고, 금 47,16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4. 10. 1.부터 위 도면표시 ㉤㉥㉦부분 합계 137㎡의 인도일까지 매월 57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의 이대팔, 조왕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10, 9, 8,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1㎡ 및 같은 도면표시 3, 25, 14, 13, 12, 11,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7㎡에 관하여, 피고 ○○건설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1986. 3. 26. 접수 제1429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지원 1978. 9. 28. 접수 제117724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지원 1975. 12. 9. 접수 제7258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위 제2도면 표시 ㉠, ㉡부분 합계 298㎡가 소의 이대팔, 조왕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3640 판결)

[참조판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

☐ 소유권확인등 청구(등기부소실, 재산상속,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123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이학수, 동 서재철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 ○. ○. 접수 제235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승호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 ○. ○. 접수 제547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멸실된 지적공부가 복구되지 아니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등의 이익 유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내용 및 정도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참조판례]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상속지분, 공동소유)

대전 ○○구 ○○동 566 답 6,307.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5,679㎡는 원고들의 별지 상속지분표시 지분 비율에 의한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권확인등 청구(소유권한의 복구, 미등록 토지, 원인무효)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지방법원 20○○. ○. ○. 접수 제1234호로서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지방법원 20○○. ○. ○. 접수 제6547호로서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기초사실관계]

원고는 등기원부의 소실로 인한 지적복구 당시 토지대장에 원고 명의의 소유자 복구를 하였으나 새로이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유권한의 복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다.

㊦ 소유권확인등 청구(주소 미등록 토지, 상속, 시효취득, 대위에 의한)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사이에 ○○시 ○○구 ○○동 123-4 대 100㎡는 피고 김○○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자의 생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그 연령이 80세 가량이라면, 오늘날 사람이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18683 판결).

㊦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유자 미복구토지, 매매, 채권자 대위)

1. 피고 대한민국은 ○○도 ○○군 ○○면 ○○리 산 1-2 임야 00㎡, 같은 리 산 1-3 임야 00㎡가 피고 박○○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의미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 3627호, 1991. 12. 31. 실효) 제20조는 1991. 12. 3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무주의 토지로 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그 기한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거나 또는 국가가 위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국가가 그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3690 판결)

㊦ 소유권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상속지분, 시효취득 지역권설정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대전 ○○구 ○○동 202-2 도로 606㎡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의 상속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요역지 대전 ○○구 ○○동 99-2 도로 750㎡를 통행하기 위한 승역지 같은 동 202-2 도로 606㎡ 중 별지 상속표 상속분란 기재의 각 해당분지에 관하여 1954. 3.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시행일로부터 같은조 제1항 소정의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에 불과하다.

②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위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 소유권확인등 청구(미완성 건축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또는 제2항 기재 공작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공2001상, 449)

㊦ 소유권확인등 청구(미완성 건축물, 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충남 ○○군 ○○면 ○○리 산 2-11과 접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1,30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111,300㎡에 관하여 2010.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 15446 판결, 공2000하, 1489)

㊦ 소유권확인등 청구(건축허가대장상의 건축주 명의의 말소)

1. 피고 오○응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강○환에서 피고 오○응으로 변경된 ○○군 보관 건축허가대장상의 건축주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강○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군 보관 건축허가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여부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첫째 건축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물의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 등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상속지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제1, 2토지가 원고들의 별지 상속비율표(이하 상속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 비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7, 8, 9, 10, 11, 40, 39, 38, 37, 36, 15, 35, 21, 31, 32, 3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759㎡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3. 4. 4. 접수 제2432호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같은 제3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24, 28, 29, 30, 31,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 및 같은 도면표시 4, 5, 6, 7, 33, 3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07㎡ 중 각 별지 상속표 기재와 같은 각 비율에 관하여 1975. 8. 15. 또는 2013.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②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

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판결)

☐ 소유권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토지일부)

(주위적 청구취지)

부산 ○○구 ○○동 1418 대 20.265㎡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11㎡(구지번상 같은 동 1055-130 대 1,537㎡, 같은 동 1055-128 대 1,074㎡ 부분)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부산 ○○구 ○○동 1418 대 20.265㎡ 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4, 3, 2, 1,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462㎡ 및 같은 도면표시 ㅁ, ㅅ, ㅈ, 5, 4,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203㎡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인정 요건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②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포락된 토지에 대한 복구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가액보다 많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가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㉔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하고, ○○지방법원 2002년 금제11369호 공탁금 1,327,8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4분의 1씩의 비율에 의한 출급청구권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임야)이다. 그런데 피고(대한민국)가 이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대금을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위 피공탁자의 후손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위 임야를 협의분할한 결과 원고들이 이를 각 1/4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다.

나. 소유권부존재확인

㉔ 소유권부존재확인 청구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매각을 원인으로 멸실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지 못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 등으로 인한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여부

토지의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 등으로 물길의 변동되어 일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토지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루었다는 자연적인 현상만으로 당연히 그 토지에 관한 종전 소유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65. 6. 9, 64나903 판결)

[참조판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의 및 포락 여부의 판단 시점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해면하의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포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8.25. 선고 95다18659 판결)

[참조판례] 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결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1562 판결)